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2021.6.22

본 안내는 기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중에서 6.13 중대본에 보고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향후 부처협의를 거쳐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를 개정통보할 예정이므로, 추후 일부 수정·변경될 수 있음

*** 적용시점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인도적목적(가족방문)에 한해 사전 신청가능)



1.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공통사항

□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미(未) 접종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21.7.1 시행)
영국·남아공 변이 미발생국, 교류가능국가	영국·남아공 변이발생국 (134개국, 6.9일현재)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①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기업인 계약체결 등 한정 필수업무로 한정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신설)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면에 준하는 정부직공무원 국장급 이상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대상국가)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6월, 13개국)를 제외한 국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완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인도적목적(직계존비속 방문) 대상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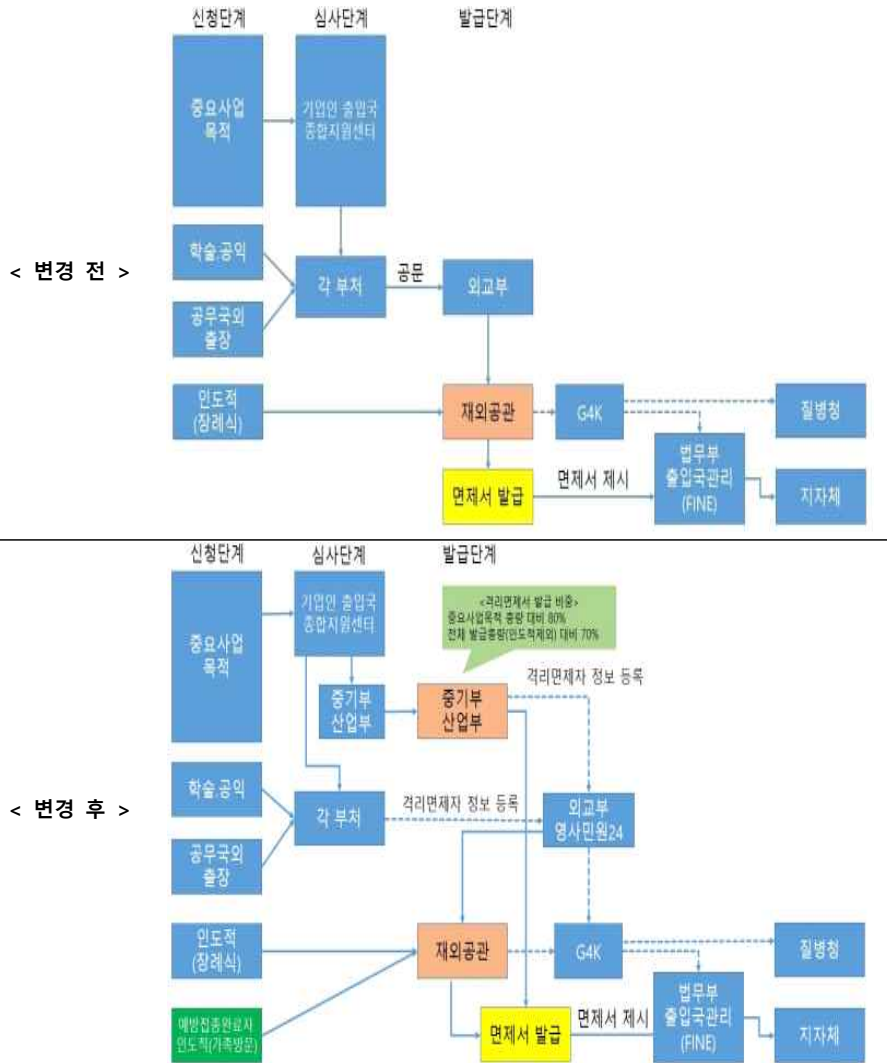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및 기준

- 인정백신의 종류
 - . WHO 긴급승인백신
 - * 화이자, 안센, 모더나, AZ, 코비실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6.3. 현재)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
 -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입국
 -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5.5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을 준용
 - *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출국 후 귀국한 내외국인

- (발급 절차) 現 격리면제서 신청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 심사 후 격리면제서 발급
- (발급 부수) 격리면제서는 **총 4부** 지참(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점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제출)
- (심사기준)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7월, 17개국)는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에서 제외
 - * 매월 변경가능하며, 격리면제서 심사시 대상국가 확인 필요
 - * 격리면제서 발급심사 당시의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여부로 발급여부를 판단하며, 이후 출발국가가 유행국가로 지정되더라도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유효함
- (증명서 위조시 조치)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등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 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방역관리) 진단검사(3회) 실시,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 의무' 해제
 - 입국시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시 PCR검사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
 - 외국인 : **입국불허**
 - 내국인 :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자부담)**
- (격리면제기간) 발급목적 관계없이 **14일**로 발급
 - 격리면제서 신청서<서식1> 상 **국내 출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 면제기간 작성 불필요**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 (신청시점) '21.7.1(목)부터 신청가능하며, 공관사정에 따라 신청이후 심사를 거쳐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단, 인도적목적(직계존비속가족방문) 격리면제서 발급에 한해 업무 수요 고려하여 사전 신청 접수 가능)
 - * 외국 현지시간 6.30 출발하여 한국시간 7.1 입국하는 경우, 현지시간 7.1 전에 출발하므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 격리면제서 심사소요기간에 유의하여 출발일 기준 최소 일주일 전 신청 권장
- (신청방법)
 - 중요사업목적의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btsc.or.kr)를 통하여 신청
 - 학술·공익적목적의 경우 소관부처를 통하여 신청
 -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직접신청(또는 소관부처)를 통하여 신청
 - 인도적목적(장례식참석, 직계존비속가족방문)의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다만** 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 발급 외에도 원격으로 신청 및 발급가능
 - * 원격 신청시 관련서류(가족관계서류, 예방접종증명서 등)는 스캔본 제출 가능
- (처리시간)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참석)과 달리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 방문(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서 방문 접수 불가

□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 방역관련 기준

구분			PCR 검사횟수				활동계획서	결과대기 장소
			총횟수	입국전	입국후1일	6-7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여	2회 (내국인)	X	○	○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숙소 대기
		직계 가족 방문	3회 (외국인)	○	○	○		
			3회	○	○	○		
	중요사업, 학술.포럼 등		3회	○	○	○		
	공무국외출장		2회	X	○	○		
미접종자	인도적 목적 (장례식참여)	2회 (내국인)	X	○	○	활동계획서 준수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시설대기	
		3회 (외국인)	○	○	○			
	중요사업, 학술.포럼 등		3회	○	○	○		
	공무국외출장		2회	X	○	○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2.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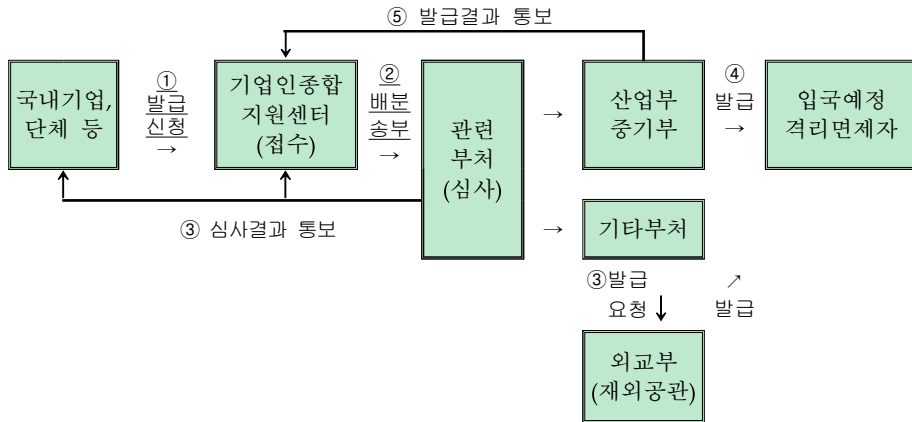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12개**):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E-7(특정활동)

* 중요사업상 목적에 한하며, 공익적·학술적, 인도적 목적 등은 전체 사증 가능

**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중수본-8880호, 21.3.18) 21.3.19부터 적용

○ 발급 절차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고, 분야별로 관련 부처에 배분 송부
- 종합지원센터는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접수 및 배분·송부 지침’에 따라 접수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관련 부처에 배분·송부
- 배분·송부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부처는 사유와 함께 해당 배분·송부 신청서를 종합지원센터로 반려하고, 반려된 신청건은 산업부가 일괄 심사
- **산업부, 중기부**는 심사 후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및 신청인 정보(서식-5)를 외교부 영사민원24(재외국민 민원포털)에 등록

- **산업부, 중기부**의 관련부처는 심사 후 신청인 정보(서식-5)를 외교부 영사민원24(재외국민 민원포털)에 등록, 재외공관은 부처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참고하여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 ※ 긴급하거나, 사전에 부처와 협의중인 경우 등 신청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접수·심사 가능

○ 격리면제서 정보 변경시 내용변경 절차

-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 중기부**인 경우: 해당 부처(**산업부, 중기부**)
-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그 외 부처인 경우: 재외공관
- . 학술·공익, 공무국외출장 및 인도적 목적인 경우: 재외공관
- . 심사 완료된 **격리면제서의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사부처 재심사 필요 없이 **재외공관에서 수정 가능**(산업부, 중기부에서 발급된 격리면제서 제외)

* 격리면제서 상의 성명 오탈자, 입국예정일, 격리면제기간 등

○ 관련 부처 및 분야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체부(문화, 체육),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입양),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
- 해당분야 등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부가 총괄하여 심사, 필요시 해당부처에 검토 의견 요청 가능

○ 심사기준

-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

○ 대상국가

-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7월, 17개국)를 제외한 국가

* 매월 변경가능하며, 격리면제서 심사시 대상국가 확인 필요

- 신속통로 중단국가인 일본, 싱가포르의 기업인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에 포함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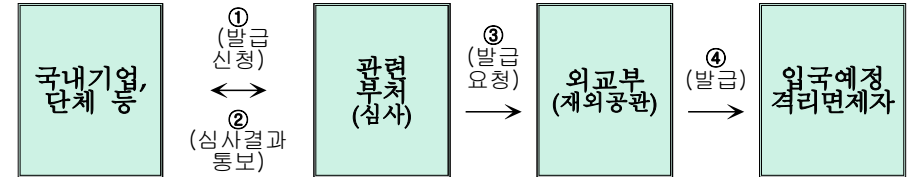
신청기업·단체 등 → 관련부처 (격리면제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대상자 여권 사본 및 재직증명서*(내국인), 신청기업·단체 등의 관련 정보(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신청기업과의 계약서로 대체 - 방문목적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청장, 계약서, 사업·행사 등 진행상황, 방문 외국기업·단체 현황 등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방역계획 미작성) (서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방역계획서의 경우,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단체 작성 가능하며, 면제대상자와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대표) 모두 서명 필요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서식-3)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제출 - 기타 중요·긴급 및 불가피성 증빙서류 및 관련 부처가 요청하는 서류 등

면제대상자 → 재외공관 (격리면제서 발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대상자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 불가, 원본과 동일한 사본 가능)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면제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학술·공익적 목적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 발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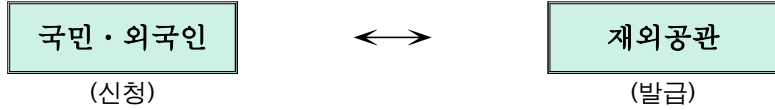
※ 국제회의 등 규모가 큰 행사는 반드시 질병관리청과 사전협의 필요

○ 제출서류

신청인 → 심사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여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제출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체류지의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제출 가능) - 기타 심사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발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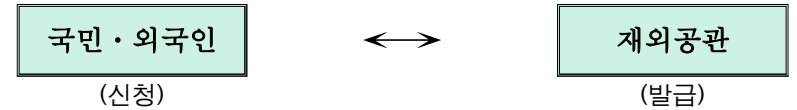


- 발급 대상이 되는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 본인의 배우자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는 격리면제 가능*
-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 심사기준
 -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책임)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여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제출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인도적 목적(직계존비속 방문)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발급 절차



-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으로 확인 (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
 -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 심사기준
 -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확인
 -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책임)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여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필요시 입양관계 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제출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국외출장 공무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발급 대상: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 발급 절차: '인도적 목적'과 동일
 - 출장지에 대사관 등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무출장명령서*로 대체
* 국가전략개발원 '공무해외출장명령 확인서' 포함(중수본-28440호, 2020.10.29.)
- 발급 대상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
*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기관의 국외출장 계획서에 포함된 수행인력의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
 - 외국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국내로 단기입국(14일 이내)하는 경우도 포함
 -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및 국제기구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국내로 귀입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심사기준
 - 공무출장명령서 및 출입국 항공권 등 확인
-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신분증(여권, 공무원증 등)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제출 - 격리기간 입증자료(현지 격리시)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방역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에서 내용 추가 가능

<서식-4>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1. 본인(회사 대표 ○○○)은 (국적) ○○○(생년월일, 성별) 등 ○인 (이하 격리면제자)에 국내 방역수칙에 따라 이동 및 활동범위 제한 등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준수·이행·관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관리책임을 이행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후 6~7일 사이 진단 검사(8일 이내, 음성확인서 제출), 능동감시(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 콜센터 전화응대 등) 의무 수행,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계획대로 이행 및 (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

3. 본인은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신청 목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도록 관리할 것이며, 필요시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등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서 및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에 따른 것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 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신청일 : 년 월 일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등 대표) : (서명 또는 인)

○○○ 부 장관 귀하

※ 방역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에서 내용 추가 가능

<서식-5> 격리면제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해당, 미해당)

[원본]

격리면제자	성명	성별	[] 남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휴대전화(본인)	
	체류자격(외국인만)	한국내 긴급연락처 (초청기업, 가족 등)	
	한국내 주소(상세기재)	(전화:)	
	직업(직장/직위명)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출발국가	출발일 및 편명	
입국예정일	격리면제 기간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출국예정일	행사장소(장례식장 등)		

격리면제사유	※ 중요한 사업상(계약, 투자 등) 목적, 학술·공익·인도적 목적 등에 대한 상세사유 적시
--------	--

점부서류 ※ 격리면제신청서 중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뒷면 첨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위의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후 14일간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한 바, **담당관**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입국 후 격리면제를 허가합니다.

- ※ 주의사항**
- 동 면제서는 1회에 한해 인정되며,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국 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대한민국 입국 시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최대 1박2일 대기), 음성일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입국 후 진단검사서에서 양성인 경우 또는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될 경우 면제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되며, 기존 격리수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입국 후에는 대한민국 감염당국의 안내를 받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하고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건강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 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이 중단되고 즉시 격리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격리면제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대로 이행해야 하며,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면제목적 외 활동을 할 경우 면제의 효력이 중단되고 격리조치되며,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 동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불허되거나 강제퇴거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기간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할 경우, 면제서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 신고한 후 방역절차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까지 자가 또는 시설(자기부담 최대15만원)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면제서 발급자	(직급)	(성함)	(연락처/이메일)
--------------	------	------	-----------

년 월 일

○○부 장관 · 주○○대한민국 대사(총영사관) 직인

<서식-6> 격리면제자 정보

① 면제 번호	엑셀
② 신청 부서	부동산정책지원과
③ 담당	김민준
④ 신청 일자	2021.01.05
⑤ 소재지	서울특별시
⑥ 신청 일자	2021.01.05
⑦ 여행 연월	2021.01.05
⑧ 여행 연월	2021.01.05
⑨ 이메일(연락처)	gildong@meil.com
⑩ 체류자격	취업비자
⑪ 긴급연락처(신청기업, 가족 등)	010-9876-5432
⑫ 한국 주소	서울시중구노루포동
⑬ 직업(직장)	주가나눔산
⑭ 초청기업	주안테크
⑮ 초청기업 담당자 연락처	010-0000-0000
⑯ 출발 일자	2021.01.12
⑰ 출발 일자	2021.01.12
⑱ 여행 연월	2021.01.13
⑲ 1인 여행 시간	05
⑳ 출발 예정 일자	2021.01.30
㉑ 각국 면제 시작 일자	2021.01.15
㉒ 1인 면제 종료 일자	2021.01.29
㉓ 면제 사유	이동제한사업상목적(계약투자 등)
㉔ 면제상세 사유	
㉕ 면제서 발급 기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㉖ 발급 국가	미국

※ 엑셀 서식 활용/ 한국내 주소 상세 기재 / 연락처는 한국내 전화번호 기재
면제사유가 '기타'인 경우 **면제상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 경우 22번 항목(격리면제사유)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입력

	변경 전	변경 후
미접종자	01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02 중요한 사업상 목적(교류확대 가능 국가) 03 학술 공익적 목적 04 인도적 목적 05 국외출장 공무원 06 기타	01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02 중요한 사업상 목적(교류확대 가능 국가) 03 학술 공익적 목적 04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05 국외출장 공무원 06 기타
해외접종완료자	-	1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중요한 사업상 목적 1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학술 공익적 목적 1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14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15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국외출장 공무원